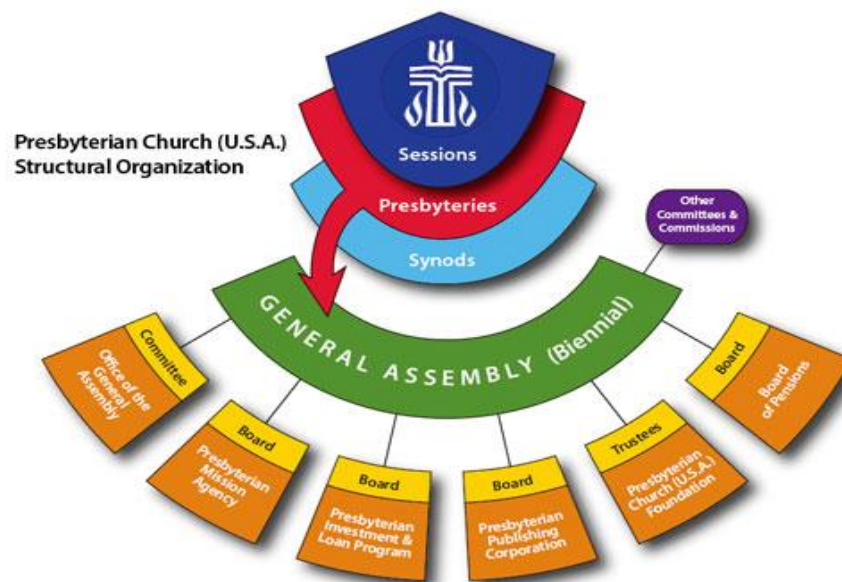


Minutes

The 57th Stated Presbytery Meeting

Fayetteville , NC
Dec.4, 2017 Monday, 5:00 pm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629 Centerville Rd. Herndon, VA 20171

(301) 864-9255

www.akap.org

The 57th Stated Presbytery Meeting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Fayetteville, NC Dec.4, 2017 5 pm

제 57차 대서양 한미노회 정기노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잇빌 시에 이소재한 웨잇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2017년 12월 4일 오후 5시에 회집되다. 부노회장 남윤상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378장(새 578장)을 부른 후에 평신도 부노회장 박종우 장로의 기도에 이어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신명기 3:23-29절을 봉독한 후 말씀을 전한 후 경건회를 마쳤다.

이어서 노회장 인도하에 환영인사를 나눈 후에 회무에 들어가 회원점명을 하니 성수가 되어 서기 노회장에게 보고한 후 개회를 선언하고 다켓에 나온 대로 회순 채택을 임시로 받기로 하고 회무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윤치현, 배현수, 김정숙, 권준, 강기석, 남윤상, 김세준, 조진영, 최병기, 박종식, 허성령, 김선재, 안현준, 김범수, 박연익, 김응배, 조남홍, 최병호, 조명철, 임낙길, 이정남, 조은상, 김대왕, 선우주현, 하상범, 전진은 (이상 목사회원), 최창규, 마종욱, 김형순, 김창수, 김춘호, 권성관, 신운진, 박종우 (이상 장로회원) 전체 34 명 참석 및 3 당회 이상이 출석하였다.

PM

- 05:00 1. 개회기도(Meeting Constituted with Prayer)
- 05:05 2. 경건회(Devotion)
 - ① 사회: 남윤상 목사 (부 노회장)
 - ② 기도: 박종우 장로(부 노회장)
 - ③ 설교: 조은상 목사(노회장)
- 05:30 3. 환영 및 인사(Welcome & Greetings) – 노회장, 조은상 목사(Moderator)
- 05:35 4. 회원 점명(Enrollment) – 부서기(Associate Clerk) – 김응배 목사,
- 05:40 5. 회순채택(Adoption of Docket) –노회장 조은상 목사
- 05:45 6. 회의록 통과(Minutes Approval)–노회장 조은상 목사
- 05:50 7. 서기보고(Stated Clerk's Report) –서기 조남홍 목사
- 06:00 8. 회계보고 (Treasurer's Report) –(Treasurer) –회계 김형순 장로



-정회-저녁식사

- 07:30 9. 운영위원회보고(General Council Meeting Report)–서기 조남홍 목사
- 07:35 10. 각 위원회보고 및 헌 의안(Reports & Recommendations of Committees)
- 07:40 a. 후보생 위원회 (Committee on Preparation of Ministry)–위원장 김정숙 목사

- 07:50 b. 교육위원회 (Committee on Ed. & Congregational Life)-위원장 김신태 목사
 08:00 c. 목회위원회 (Committee on Ministry)-위원장 조은상 목사
 08:30 d. 공천 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위원장 박연익 목사
 09:00 e. 대표 위원회 (Committee on Representation)-위원장 윤치현 목사
 09:10 f. 선교/교회개발위원회 (Mission & NCD Committee) – 위원장 배현수 목사
 09:20 11. 특별 위원회보고 사항 (Special Committees & Commission)
- 총무청빙위원회보고-청빙위원장 최병호 목사



총무 이취임식-헌법질문-이취임인사

- 내규수정위원회(53차 노회취임사항)-위원장 배현수 목사
 - 이사회(Board of Trustee)-이사장 박관준 목사
 - 행정위원회(AC-Maryland Pres.Church)- 위원장 윤치현 목사
12. 신안건-미국장로교 한미노회 연합회 헌의안 통과.
13. 사무총장보고 및 광고 (Executive Presbyter's Report & Announcement
 10:00 13. 폐회(Adjournment) 축도 : 신임 노회장

서기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다.

통신(수신)- 결의나 검토가 필요한 공문들은 해당 부서에 보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회부했다는 보고를 하다.

1. 내용 증명서신(윤성찬 전도사)-내슈빌 미들노회로부터 (11/20,2017¹)
2. State's Attorney Office Re: State of Maryland vs An John (11/03, 2017)
3. 믿음의 여성상 추천공문- Racial Ethnic/Women's Ministries (11/01/2017)
4. 메릴랜드장로교회 당회의 청원건에 대한 당회 입장(10/09/2017)
5. 2017 3rd QR Loan Performance Reports (10/10/2017)
6. 부목사 포지션 해소 및 의무금 해제 (2016년 12월 9일부)Fayetteville KPC,(10/11/2017)
7. Synod of Mid-Atlantic-Maryland P.C.-Locked out matter (Sept.8, 2017)
8. Sam Jett(Lawyer)-to lock out matter for the Maryland Pres. Church (10/18/2017)
9. Special Church Extension Fund #654-Richmond Central PC (09/27/2017)
10. 메릴랜드장로교회 교인등록에 관한 청원건(09/05/2017)
11. 노회보험-Property of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가입(09/05/2017)
12. Pre-Trial Conference (SPJC) (08/17/2017)
13. 55-1차 노회에 대한 안현준 목사와 김범수 목사의 고소장(08/17/2017)
14. Associate Pastor Position abolished(Bethany)-Board of Pension (08/02/2017)
15. Consolidated Tax and Fee 고지서 (07/0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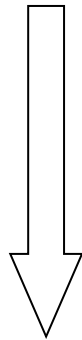
¹ 날자는 해당기관이 발송일로 기록 됨

16. Sam Jett-변호사 계약서-메릴랜드장로교회 vs 한미노회(06/2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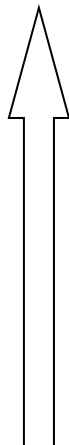
(발신)

1. 김범수 목사 및 안현준 목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11/25/2017)
2. 메릴랜드장로교회 당회-목회위원회 출석 3 차 통지서 -당회 및 안현준 목사 (11/21/2017)
3. 건물 사용인증서 -이사회와 목회위원회가 메릴랜드장로교회 청원자일동에게(11/21/2017)
4. 목회위원회 회의록 발송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 및 안현준 목사 (11/21/2017)
5. 교회소속 증명서 -웨잇빌 한인장로교회 (11/20/2017)
6. 후보생 확인 증명서 -윤성찬 전도사 (웨잇빌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부임)(11/20/2017)

재정보고-김형순 장로 (회계)-다음과 같은 개정 된 (Revised) 보로를 받다.



-재정보고서 부분가지 공란--



수입현황보고(7월18일-11월30일)

Row Labels	Sum of Amount
1001 Grant	7500
PCUSA	7500
Transfer	2000
AKAP	2000
기타	85.1
Mid-Atlantic Synod	85.1
대회상회비	526.4
Southeast Hanmi P.	526.4
상회비	4400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2000
예수사랑	375
위싱턴시온	800
위싱턴에덴장로교회	425
월명통한인장로교회	800
은퇴기금	13775
Southeast Hanmi P.	8000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1000
예수사랑	187.5
위싱턴시온	750
위싱턴에덴장로교회	212.5
월명통한인장로교회	400
웨잇빌한인장로교회	3225
재난구호금	6000
PCUSA	6000
재난구호현금	12852
Bethany Pres. Church	6475
First KPC of MD	1125
Hagerstown KC	650
Jesus Love Church	300
Open PC of Hinesville	360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2522
위싱턴에덴장로교회	620
차타누가 시온 KPC	800
총회상회비	4935
Southeast Hanmi P.	4935
Grand Total	52073.5

지출현황보고(7월18일-11월30일)

Row Labels	Sum of Amount
AD(노회운영비)	14814.61
AD/L	2247.82
adm	1168.34
consulting	8000
MT	533.28
MT-G	721.52
MT-L	79.09
MT-M	837.97
MT-R(등록비)	1100
postal	126.59
CO(통신)	766.36
adm	25
phone	741.36
FA(사무실 ;7-8월)	600
rent	600
MISC	36
adm	36
Mission(20352
contribution(재난구호	12852
Grant(코람데오)	7500
PC(대회 & 총회상회비)	13903.9
PC	13903.9
RET	16000
RET	16000 *actual \$14000.00
void	0
N/A	0
Grand Total	66472.87

2017년 재난(수해) 구호현금 현황

Church	Amount	Pastor
Jesus Love Church	300	이대성
First KPC of MD	1125	조은상
Open PC of Hinesville	360	박종식
Bethany Pres. Church	6475	최병호
차타누가 시온 KPC	800	김대왕
해거스타운교회	650	윤치현
위싱턴에덴장로교회	620	김용배
KPC of Salisbury	2522	전진은
Total	\$ 12,852.00	

*\$3,000.00 은 노회산하 피해입은 교회를 위한 지정현금

총회로 직접 보낸교회(report only)

Church	Amount	Pastor
웨잇빌KPC	3958	이정남
리치몬드KPC	5000	이영호
리치몬드중앙	2000	전은기
위싱턴시온	1301	김신태
Total	\$ 12,259.00	

*\$2,000.00 휴스턴중앙장로교회

총회로 보내진 금액	9852
태풍피해입은 2교회	3000
총회로 직접 보낸 금액	12259
Grand Total	\$ 25,111.00

회원교회 및 회원교회현황

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	-----	------	------	------	------

1	리치몬드	이영호	서유석
2	리치몬드중앙	전은기	김 인
3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조동열
4	메릴랜드제일	조은상	김창수
5	솔즈베리한인	전진은	김일배
6	수도	조명철	
7	워싱턴시온	김신태	김인식
8	워싱턴에덴	김응배	최창규
9	워싱턴평강	서보창	?
10	필라제일	김요셉	?
11	웨잇빌	이정남	김춘호
12	덴버한인중앙(N)	강기석	김순원

미조직교회 및 Fellowship

번호	교회이름	교역자	출석여부	교인대표	출석여부
1.	가나안교회	Vacancy			
2	워싱턴소망(L)	배현수			
3	솔즈베리사랑(L)	정태은			
4	예루살렘(L)	명돈의			
5	월밍턴(N)	박연익			
6	코너스톤(N)	이승환			
7	해거스타운(N)	윤치현			
8	행복한교회(N)	임용락			
10.	워싱턴동산교회(N)	김범수			
11.	뉴풋뉴스장로교회	권 준			

*비활동회원

F=fellowship, N=New Church Development, L=Lack of a quorum

회원명단

정회원 (Validated Member) - 조직교회

번호	이름	교회	Church Status	Status
1	전진은	솔즈베리	Organized	Active
2	이정남	웨잇빌	Organized	Active
3	김응배	워싱턴에덴	Organized	Active
4	조은상	메릴랜드제일	Organized	Active

5	강기석	덴버중앙장로교회	<i>Organized</i>	<i>Active</i>
6	서보창	워싱턴평강	<i>Organized</i>	<i>Active</i>
7	이영호	리치몬드	<i>Organized</i>	<i>Active</i>
8	전은기	리치몬드중앙	<i>Organized</i>	<i>Active</i>
9	조명철	수도	<i>Organized</i>	<i>Active</i>
10	김요셉	필라제일	<i>Organized /?</i>	<i>?</i>
11	안현준	메릴랜드장로교회	<i>Organized</i>	<i>Active</i>

정회원(At-large)-미조직교회 및 부목사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배현수	소망교회	<i>Lack of quorum</i>	<i>O GP</i>
2	이대성	예수사랑의 교회	<i>At large</i>	<i>O GP</i>
3	이승환	코너스톤장로교회	<i>At large</i>	<i>O GP</i>
4	이용일	리치몬드 한인	<i>Associate Pastor</i>	<i>Active</i>
5	임용락	행복한교회	<i>At large</i>	<i>O GP</i>
6	윤치현	해거스타운한인교회	<i>Organizing pastor</i>	<i>O GP</i>
7	정태은	사랑의교회	<i>Organizing pastor</i>	<i>O GP</i>
8	김성진(A)	At-Large	<i>In transition</i>	<i>?</i>
9	김응배	Bedford 장로교회	<i>At large</i>	<i>O GP</i>
10	박연익	월명턴한인장로교회	<i>Organizing Pastor</i>	<i>Active</i>
11	김범수	워싱턴동산교회	<i>Lack of quorum</i>	<i>Active</i>
12	권준	뉴풋뉴스한인장로교회	<i>Lack of quorum</i>	<i>Active</i>
13	김성원	워싱턴시온장로교회	<i>Associate Pastor</i>	<i>Active</i>

*타교단 or beyond jurisdiction

*OGP=Organizing Pastor-membership needs to be renewal annually.

* ? Means membership is in question.

정회원(Specialized Ministry)

번호	이름	교회/사역처	
1	김정숙	<i>At-Large</i>	<i>Active</i>
2	김정훈	<i>At-Large</i>	<i>?</i>
3	김지훈	<i>At-Large</i>	<i>?</i>
4	명돈의	예루살렘장로교회	<i>?</i>
5	박승환	<i>At-Large</i>	<i>Active</i>
6	손상웅	씨드선교회	<i>?</i>

7	조남홍	대서양한미노회	Active
8	조호성	At-Large	?
9	조은경	At Large	Active
10	이영진	At-Large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1	김성웅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2	조병철	Retired	Retired	RT
3	신동환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4	박관준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5	조남홍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비활동대상: 김정훈, 김성진(A), 김지훈, 김요셉, 조호성, 제명대상: 명돈의,

남부지역(2017)

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부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허성영, 김남준		권성관/오세광	
2	발도스타제일	임낙길		강수미/정창훈	
3	사바나	남윤상		신운진	
4	하인스 빌열린	박종식		변윤흠/황규천	
5	에벤에셀	김창환		김분화/배진능	
6	조지아	조진영		신남순/윤태근	

미조직교회

번호	교회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갈렐리	김세준			
2	시온장로	김대왕			
3	4 Points	임기윤			

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사역기관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Status
1	권영갑	혼두라스				At Large
2	김남준	베다니				Active
3	김대왕	시온				Active
4	김범수Kris	공군체플린				At Large

5	김선재	예수소망			At Large
6	김세준	갈릴리			Active
7	김창환	에벤에셀		김분화/배진능	Active
8	남윤상	사바나		신운진	Active
9	박종식	하인스빌열린		변윤흙/황규천	Active
10	송기철	한비전교회(EM)			At Large
11	신정인				At Large
12	윤택한	SFTS			At Large
13	임기윤	4Points(EM)			Active
14	조진영	발도스타		강수미/정창훈	Active
15	최병기	조지아		신남순/윤탈근	Active
16	최병호	베다니		권성관/오세광	Active
17	허성영	베다니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	출석여부	Status
1	이원걸	열린장로교회명예은퇴목사		Honorable Retired
2.	임낙길	발도스타장로교회명예은퇴목사		Honorable Retired

각위원회 보고를 받다.

운영위원회보고를 받은 후에 헌의안을 받다.

제 80 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때와 장소: 제 80 차 대서양한미노회 운영위원회가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워싱턴 에덴장로교회 (노회사무실)에서 열린다.

경건회: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212 장을 제창한 후 노회장 디모데 후서 6장 18-19절을 봉독한 후 "선한 사업, 선한일들이 시작 되기를 기원하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동안의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 후에 기도로 경건회를 마친다.

정족수: 이어서 출석을 점검하니 12 명이 참석하다. 참석자: 조은상, 박관준, 김정숙, 강기석, 김응배, 윤치현, 박연익, 조남홍(이상 목회자) 박종우, 김형순, 최동구, 김창수(이상 장로) 가 참석하고 마종욱(장), 김춘호(장), 김신태(목)는 excuse 하다.

개회와 환영: 정족수가 넘으므로 위원장 보고를 받고 개회를 선언하다.

회순채택: 받기로 하되, 전회록 78차를 79차로, 헌의사항 2 번에 박종우 장로 반대 표시 기록이 누락 되어 추가하기로 하고, 79-1차 장소와 일시 그리고 참석인 명단을 추가할 것과 8월 21일 에덴장로교회에서 모였다는 사항을 교정한 후에 받기로 하다.

회계보고: 총수입 67,890.17전, 총지출 75,897.28전으로 8,007.11불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다.
 각 위원회 보고는 해당 위원회에서 노회에 별도로 보고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록을 제외하고 결의 사항만 기록한다.

결의 사항

1. 운영위원회는 목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목회위원회가 G.2-0904를 따라 메릴랜드장로교회(담임목사, 당회, 및 교인들 대표)와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57차 노회에 현의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다.
2. 공천위원회 보고 3년조-전진은 목사와 서유석 장로로 정하다.
3. 민족장로교회 이명 현의안이 지난 노회에서 누락 되어 차기 노회에 가부를 결정하며 경위 설명은 총무가 한다.
4. 내규수정 위원회를 해산하고, 공천위원회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5. 내규 수정은 기간을 정해서 차기 노회에 초안을 제출하게 하기로 요청하기로 하다.

보고 및 건의 사항

1. 차기 총무로 추천을 받은 강기석 목사와 간략한 인터뷰 시간을 가진 후에 청빙위원회 보고를 받다.
2. 회계 김형순 장로가 내년도 예산 중에 최소한 6만 5천불이 필요한 금액으로 협력을 요청하였고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세울 것을 주문하다.
3. 재정위원회가 펀드레이징등을 하여 재원을 만들 기회를 가지도록 주문하다(김응배 목사) 폐회동의가 있어 사무총장 조남홍 목사의 축도로 폐회하다.

[현의안]-찬반 토론 후에 표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1.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목사와의 목회 관계를 목회관계를 해소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길이 없는 마지막 수단인 줄 알아서 이를 건의합니다.-목회위원회 보고 참조
2. 내규 수정 위원회를 해산 하고 재 구성할 것과 차기노회 시까지 그 초안을 제출할 것을 제청합니다.
3. 민족 장로교회 이명청원을 토의 한 후에 허락해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각위원회 보고 및 현의사항

[목회위원회]; 위원장 : 조은상 목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다..

[목회위원회 회의록] 목회위원회가 2017년 10월 12일 6시 30분 에덴장로교회(노회 사무실) 에서 모여 윤치현 목사의 기도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다.

1. 사회: 목회 위원장이 불참하였으므로 누가 사회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위원회를 소집한 노회장이 사회

- 하기로 하다.
2. 정원확인: 과반수가 넘어 개회 선언을 하다. 참석자: 조은상, 윤치현, 김정숙, 마종욱, 최동구 (Video-conference), 결석: 전은기, 배현수 Excuse: 최창규
 3. 회원권 문제
 - 3.1. 계속 불참 회원 문제: 김희태 장로가 계속 불참함으로 참여를 종용했으나 응답이 없어 더 이상 응답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임처리 한다는 통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다.
 - 3.2. 목회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목회 위원회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회위원장이 소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차기 목회위원회 참석 여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다.
 4. 안건 토의
 - 4.1. 청원서 검토 - 목회위원장이 사무총장이 보낸 청원서와 메일로 받은 청원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의를 보내 온 것에 대하여 공문 접수는 사무총장/정서기가 접수한 것 만이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에 의견의 일치를 보다.
 - 4.2. 청원서는 박창화 씨 외 15 명으로² 적시 되어 있으므로 박창화 씨의 장로의 결격 사유가 있음을 (회원권이 회복 되기전까지는) 인정하고, 청원서의 주체가 "우리"로 표현 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박창화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청원을 받기로 하다.
 - 4.3.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의 답변에 대한 토의- (요청한바 없으나 보내왔음)
 - 4.3.1. 당회의 답변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 받기로 하고 양측을 불러 사실 확인을하기로 하다.
 - 4.3.2.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
 - 4.3.2.1.1. 교인등록카드
 - 4.3.2.1.2. 2017년 방문자 카드
 - 4.3.2.1.3. 내규
 - 4.3.2.1.4. 내규를 통과한 공동회의 회의록
 - 4.3.2.1.5. 교회요람
 - 4.3.2.1.6. 교회 출석부
 - 4.3.2.1.7. 당회록
 - 4.3.2.1.8. 출석요구=당회장과 당회 서기 및 청원자 대표 2 명 (박창화 씨 제외)
 - 4.3.2.1.9. 출석날짜 2017년 10월 17일(화), 부득이한 경우 19일(목)
 - 4.3.2.1.10. 장소: 메릴랜드제일장로교회
 - 4.3.2.2. 기타 준수 사항
 - 4.3.2.2.1.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3.2.2.2. 요청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한다.
 - 4.4. 기타_ 목회위원장이 고의로 소집하지 않을 경우 목회 위원회 소집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로부터 받기로 하다. 기록 : 조남홍 (서기), 녹음: 김응배 (부서기)
 - 4.5. 총회 헌법위원회에 문의한 아래 내용은 합법이라는 통보를 받음

² 15명으로 알고 발표했으나 청원서에는 박창화씨를 제외하면 20명으로 차기 목회위원회에서 재확인하여 정정이 필요함.

Robert Rules Article IX Committee & Boards.

Art. 50 It is the duty of the chairman to call the committee together, but, if he is absent, or neglects or declines to call a meeting of the committee, it is the duty of the committee to meet on the call of any two of its members. In small special committees the chairman usually acts as secretary, but in large ones and in all standing committees, it is customary to elect a secretary, who keeps a brief memorandum of what is done,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society have a right to appear at the committee meetings and present their views on the subject before it at such reasonable times as, upon request, the committee may appoint. But during the deliberations of the committee no one has a right to be present, except members of the committee.

[목회위원회 회의록] 목회위원회가 2017년 10월 19일 오후 6시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회의실에서 다시 모여 노회장 조은상 목사의 기도로 개회하다. 참석자: 조은상, 김정숙, 마종욱, 윤치현, 최동구(비디오오), Excuse: 배현수

안건처리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결정하다.

1. 전은기 목사의 사표를 반려 했으나 받지 않으므로 수리하기로 하되 위원장직만 사퇴하는 것인지 위원까지 사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로 하다.
2. 목회위원장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논의한 차기 목회위원장은 현 노회장이 맡게 되므로 노회장이 당분간 겸하기로 하다.
3. 불출석시 권리포기로 간주한다는 1차통보에도 불구하고 2차 출석통보에도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장과 서기가 출석에 응하지 않았기에, 청원자측에서 대표들을 보내 왔으므로 해 당회가 보낸 답변서를 토대로 청원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사실진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책을 협의하기로 하다.

3.1. 당회가 보낸 답변서를 항목별로 질문하고 증언자/참고인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다.

3.1.1. 등록카드 존재여부 및 획득절차 및 당회의 태도

(강귀임, 박복순) 교인등록카드를 2017년 6월 18일부터 출석후 그 다음주부터 수차례 요청해도 등록카드가 없거나 교육을 받고 당회가 판단하여 줄수 있다는 답변만 재차들었다

3.1.2. 청원자 대표들의 신앙, 교회 출석, 및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들어오기전의 신앙생활 및 들어온 이유와 그 당위성

(강귀임) 담임목사가 집사내외를 폭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런 일이 없었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잠시 떠났으나 20여년이상 교회 집사, 권사와 여선교회 부회장을 수차례지내며 열성적으로 섬긴사람으로 모교회를 버릴수 없어 다시 등록을 원하였으나 거절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

(박복순) 개척멤버로 45년이상을 중직자로 섬기며, 안현준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는데 앞장선 사람으로 무고한 집사가 고소 당하고 교회가 분란이 나는데 책임을 지는 심정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으나, 평생을 바친 내집 같은 교회를 다시 섬기려 돌아왔다.

3.1.3. 노회에 제출한 등록자 카드가 당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당회 답변과 교회 이름이 변경된 사안등에 대한 사실확인

(김덕영 장로-목회위가 참고인으로 허락) 등록서를 주지않아 교회내에 있던 것(하나교회 명칭)을 청원자가 가져와 교회이름을 바꾸어 적은 것이다.

3.1.4. 당회가 제출한 교인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을 내규나 요람 교회게시판에서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

(마종욱 장로, 김정희 권사- 현 활동교인들로 목회위가 참고인으로 허락)

한번도 교회에서 보고 듣지 못한 것이며, 김정희 권사가 제출한 내규도 요람에 실려있는 것이 아니고 2014 년판으로 행정위가 나누어 준것으로 밝혀졌고 그곳에도, 교인등록절차는 들어있지 않고, 내규 공동의회를 가진적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본인들도 활동교인이 되기위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3.1.5. 친교실 사용 등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답변

(강귀임, 박복순) 처음 두 주는 친교시간을 없앤다는 당회의 금지사항을 따랐으나 그 후에는 노인들의 당뇨병등 식사를 하지 않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샌드위치를 제공했는데 빨리 먹고 가라고 하며 안현준 목사가 물을 따르러 내려와서 경찰을 불러야하겠다 말해서 놀랐다. 이후 빵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 식사로 바꾸고 현 활동교인들도 초대하여 일부는 함께했다.

3.2. 현재 교회 상황과 담임목사의 목회에 대한 청취

(현 활동교인인 김정희 권사) 본인은 끝까지 안목사님을 옹호했으나, 교회의 설립자들과 몇십년씩 섬기고 목사님을 모셨던 교인들의 등록자체를 막으며 핍박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련의 일들에 참을수 없어 돌아섰다. 사도신경으로 "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신앙고백을 하는데 목사가 성도간 친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수 없고, 감시 카메라로 교제하는 성도들을 당회실에서 감시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교회냐?

3.2.1. 모든 질의 응답은 녹음 되는 사실을 청원자들에게 통지, 허락하에 실시되었다.

4. 토의

청문회 자료와 그간의 메릴랜드 장로교회 안현준 목사와 당회가 행 해온 일에 대하여 토의 시간을 갖고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다.

- 4.1.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등록자체를 막는 것은 PCUSA 헌법이 명시한 환영과/개방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오는 사람을 막는 것은 그리스도를 막는 것과 같다.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는 등록청원자들을 최초 출석일(2017년 6월 18일)부로 등록된 것으로 인정한다.

G-1.0302 환영과 개방성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유로나 교회 회원권을 거부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해 비방을 가져오는 일이다.

- 4.2. 당회는 청원자들에게 내규에도 없는 허위, 급조된 교육절차를 적용할수 없고, 원래 두 교회가 합친후 이전교인들과 공평한 절차를 통해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권고한다.

- 4.3. 등록된 청원자들도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으므로 교회 사용권을 허락한다.
 - 4.4. 안현준 목사를 공문서 위조, 허위 증언, 노회 지시 불이행등 노회 관할권을 스스로 파기하는 행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사법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절차를 밟도록 통보한다.
 - 4.5. 안현준 담임목사의 3개월간 행정휴가(Administrative leave)를 당회에 지시한다.
 - 4.6. 차기 노회에 안현준 목사와 따르는 교인들은 타 노회로 옮겨갈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 윤치현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8 시 52 분이였다).

안현준 목사 목회관계 해소 결의안

안현준 목사와 메릴랜드장로교회와의 목회관계 해소 현의안은 총 34 명중 찬성 24 표 반대 9 표로 가결하고 임시당회장으로 조명철 목사의 추천으로 임낙길 목사를 임명하다.

[공천위원회] 위원장 : 박연익 목사-

[정회와 속회]

공천위원회의 보고를 별지로 받은 후 잠시 휴회하고 노회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 회장단을 1 년 더 유임하자는 제정안이 있었고 이어서 공천위원회의 모임을 위해서 잠시 휴회하다. 다시 회집된 후에 후에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여 회장에 조은상 목사를 재 선출하고 부노회장에 박종우 장로를 선출하여 1 년 더 봉사게 하다.

[대표위원회]-윤치현 목사 -공천 배런스가 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후보생위원회 : 위원장 :김정숙 목사- 일반적인 보고가 있었고 결의사항은 없었다.

[선교개발 위원회];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이사회보고] : 박관준 목사, 이사장을 대신 하여 사무총장의 이사회 안건을 보고 한 후에 이사회 의현의의안을 받다.

3 차 이사회 회의록

때: 2019년 10월 18일, 곳: Electronic Call Meeting.

[결의사항

[배경]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새로 출석하기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했던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노회에 청원한바 있으며 목회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한바 있다. 동 교인들은 교회 친교실 사용등 현재 당회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고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로서 노회는 이들과 현재 교회에 출석하며 노회를 상회로서 협력을 다 하는 교인들에게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의 모든 재산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 이메일을 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투표방법] 이메일을 통하여 일주일에 걸친(201710월 17일-19일까지) 찬반을 투표한 결과 전원일치로 허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자] 이사장, 박관준, 서기 김영미, 최병호, 강기석, 김영미, 이원걸, 및 김형순(자동회원으로 voice 만있음)

헌의안 1. :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추인해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사용허락서

_____에게

"대서양 한미노회 이사회는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에 속한 주정부가 인증한 소유권 (Deed of property)에 나와 있는 모든 재산(property)을 노회가 인정하는 교회와 회중이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 및 관리할 것을 허락한다. 단 필요한 법적인 상황이 발생 할 때 노회는 보다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사안은 노회의 결정에 따라 자동 조정 된다."

2017년 10월 19일 이사회

Permit

The Board of Trustee of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grants you to use the property addressed 6605 Mallery Dr. Lanham, MD 20706 as the one who has ownership with Deed of Property. The Board of Trustee, on behalf of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grants to use and to take care of it but when it comes to take action on the property, the presbytery will enact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all matters regarding to the property is bound by the presbytery and immediately effective.

[헌의사항2] -[리치몬드 중앙교회의 용자조정안에 대한 헌의안을 추인해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Investment & LoanProgram Inc.

September 15, 2017

Clerk of Session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2715 Swineford Rd
Richmond VA 23237

Re:Richmond VA -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pecial Extension Fund Note #12065409 - \$2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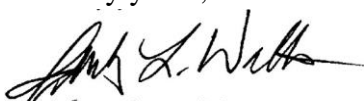
Dear Friends-in-Christ:

On September 13, 2017, the Staff Loan Team of the 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 approved an adjustment of the interest rate for the loan origina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 Corporation for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Enclosed is a copy of that ac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all 1-800-903-7457 and ask for Effie Shipp, extension 5245.

Cordially yours,


 Judy L. Walton, Director
 Credit Operations

Enclosure

cc: Presbytery of Atlantic Korean
 Synod of Mid-Atlantic
 100 WITHERSPOON STREET * LOUISVILLE KY 40202-1396 502.569.5231 * 1.800.903.7457 * 502.569.8868 FAX
 pilp.pcusa.org

SLT Adjustment Docket
 Meeting Date: 09/13/2017

LOAN HISTORY: Special Church Extension Fund
 #654 Note #12065409

Date of Note: 09/27/2007
 Original Amount: \$210,000.00
 Principal Balance: \$114,102.63
 Interest Balance: _____187.67
 Total Amount Due: \$114,290.30 (as of 09/11/2017)

Purpose: Purchase — Site Relo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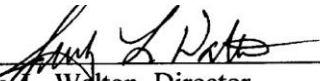
Terms: 20-year term; 20-year amortization; initial interest rate at 6.50% with monthly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in the amount of \$1 , 565.70; subject to review & revision.

Prior Adj.: Effective: 9/25/2012: Changed interest rate from 6.50% to 3.80%, leaving the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s the same.

Mission Development Resources Committee		Revision of GA Loan Terms
Borrower: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Regularly Scheduled 60-month Review
Church:	Richmond VA —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y:	Atlantic Korean-American	
Synod:	Mid-Atlantic	(Titleholder: Congregation)

RATIONALE AND RECOMMENDATION: Recommend changing the interest rate to the September 2017 GA rate of 3.50%, leaving the amount of the monthly principal and interest payment the same. Next regularly scheduled review will be due September 2022.

Recommended adjustment approv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 Staff Loan Team on September 13, 2017.



 Judy L. Walton, Director
 Credit Operations

Foregoing loan terms are accepted by the Session of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ignature/Clerk of Session Date: _____

Cc: Presbytery of Atlantic Korean-American.

[헌의안 3] 웨잇빌한인장로교회의 미션센터 건립을 위한 은행융자에 대하여 추인해 줄 것을 헌의 한 사안을 노회가 설명을 들은 후 허락하다.

Application for Permission of Presbytery to borrow money (\$200,000.00) for Mission Center construcion, real property subject to encumb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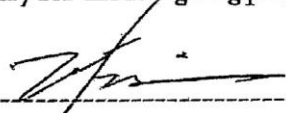
To: the Finance and Property Committee Presbytery ofAtlantic Korean Presbyt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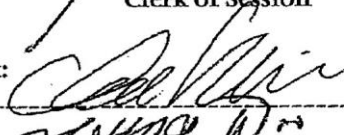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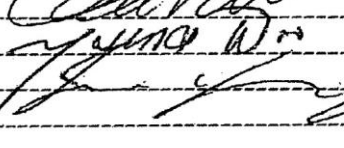
On September 10, 2017 at a regulü meeting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Fayetteville Session, the borrowing of \$200,000.00 for the construüion of the proposed new addiãon (Mission Center)

This information is to certify that finance department and property department know of no restricüions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ed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requests the written perm Presbytery for the foregoing proposed transac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 the session permission of Atlantic Korean

Signed:  김인준
 Clerk of Session

Attest:  김현욱
 이정엽

The sess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Fayetteville in transmitting the foregoing request certifies that the Congregation at a regular meeting was ~~held and~~ approved the foregoing proposed transaction.

[보고사항] -6605 Mellery Dr. Lanham, MD 20706 -Property 보험증서





Policy Number: Q971659988

Ultrapack Plus Application

The Applicant applies for insurance and represents the following to be true.

Applicant Information:

Application To: Erie Insurance Exchange	Is policy a rewrite of a current "ERIE" policy? No	Policy Effective: 12:01 A.M.	From(Mo/Day/Yr) 09/06/2017	To(Mo/Day/Yr) 09/06/2018
		Agent No. AB8280	Agent Name: DENG'S INSURANCE SERVICES	
Business Name:		Fed. Tax ID No.:	Social Security No.:	
		Contact Name: CHANG SOO KIM		
Applicant: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Inc		Phone No: 301-346-7810		
		Business Type: Corporation		
Mailing Address: 2629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 of Emp: 0	Payroll: \$60,000.00	Sales: \$100,000.00
Website:		Year Business Started: 2011		
E-mail Address:				

Location/Building Information (other than coverages):

Loc	Bldg	Street Address	City	County	State	Zip	Fire Dept
1	1	6605 MALLERY DR	LANHAM	Prince George's	MD	20706	WEST LANHAM HILLS VFS 48
1	2	6605 MALLERY DR	LANHAM	Prince George's	MD	20706	WEST LANHAM HILLS VFS 48

Loc	Bldg	Description of Operations/Occupancy	Other Occupants
1	1	Church	
1	2	Church	

Loc	Bldg	Does This Premises Have Deep Frying Or Grilling?	Do You Have Any Delivery Operations?	Do You Have Any Gasoline Pumps On Premises?
1	1	No	N/A	N/A
1	2	No	N/A	N/A

Business Name:	Agent: AB8280 DENG'S INSURANCE SERVICES
Applicant Name: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Inc	Policy Number: Q971659988

Loc	Bldg	Percent Sprinklered	Fire Alarm	Burglar Alarm	Windstorm/Hail	Distance to Fire Hydrant	Distance to Fire Department
1	1	0%	None	None	Policy Deductible		< = 1 miles
1	2	0%	None	None	Policy Deductible		< = 1 miles

Loc	Bldg	Construction	Prot Class	Total Area (Sq. Feet)	# of Stories	Year Built	Age of			
							Plumbing	Electrical	Heat	Roof
1	1	Joisted Masonry	04	2000	1	1986	2007	2009	2009	2007
1	2	Frame	04	600	1	2010	2010	2010	2010	2010

Loc	Bldg	Insured Interest	Does Insured Live in Premises? (WI)	Occupied by Applicant?	Part Occupied by Applicant?	Apartment Occupancy	Apartment Occupied by Insured?
1	1	Building Owner	No	Yes	Entire		No
1	2	Building Owner	No	Yes	Entire		No

Property Deductible: \$1,000

Blanket Coverage: No

Loc	Bldg	Building Limit	RC/ACV/GRC/ERC	CP/NP	Contents Limit	RC/ACV	CP/NP
1	1	\$386,000	Actual Cash Value	Comprehensive Perils	\$70,000	Actual Cash Value	Comprehensive Perils
1	2	\$179,000	Actual Cash Value	Comprehensive Perils	\$10,000	Replacement Cost	Comprehensive Perils

Income Protection: Actual Loss Sustained, not to exceed 12 consecutive months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Limits of Insurance	
Each Occurrence Limit	\$1,000,000
Damage to Premises Rented to You	\$1,000,000 Any One Premises
Medical Expense limit	\$10,000 Any One Person
Personal & Advertising Injury Limit	\$1,000,000 Any One Person or Organization
General Aggregate Limit	\$2,000,000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 Limit	\$2,000,000

Optional Coverages

Deductible

Amount of Insurance

Policy-Level Optional Coverages:

Property and Inland Marine - Optional Coverages:

Terrorism

Included

Automatic Adjustment of Building Coverage - 1%

Business Name:	Agent: AB8280 DENG'S INSURANCE SERVICES
Applicant Name: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Inc	Policy Number: Q971659988

Automatic Adjustment of Building Coverage - 1%

Business Name:	Agent: AB8280 DENG'S INSURANCE SERVICES
Applicant Name: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Inc	Policy Number: Q971659988

Is the Applicant located in a condominium? No

WARNING: IF ANY OF THESE QUESTIONS 1-12 ARE ANSWERED 'YES' YOU MAY NOT BIND COVERAGE - PLEASE CONTACT UNDERWRITING FOR APPROVAL.

All Applicants:

- | | |
|--|----|
| 1. Are there any other premises or operations which are NOT to be covered by this insurance? | No |
| 2. Has the Applicant ever failed to maintain liability or property insurance on this business during the past 5 years? | No |
| 3. Are there premises containing elevators? | No |
| 4. Has the Applicant ever been cancelled (incl. nonpay) or refused insurance of any kind by The ERIE or any other insurance carrier? | No |
| 5. Has the Applicant(s) ever been arrested for any reason? | No |
| 6. Has the Applicant filed for bankruptcy in the past 5 years? | No |
| 7. Any operations sold, acquired, or discontinued in the last 5 years? | No |
| 8. Is the Applicant involved in manufacturing, mixing, relabeling or repackaging of products? | No |
| 9. Does the Applicant sell or distribute foreign products not purchased from a US distributor? | No |
| 10. Does the Applicant install, service or assemble any product? | No |
| 11. Does the Applicant rent or loan equipment to others? | No |
| 12. Does the Applicant offer any skin tanning services or operate any skin tanning equipment? | No |

Prior Loss History:

Number of Years of Known Loss History: 5+
 Total # of Claims in the Past 5 Years: 0

Annual Premium:	\$1,694.00
Total Annual Premium:	\$1,694.00
Deposit:	
Balance:	\$1,694.00
Payment Plan:	A
Account Billing Number (if applicable):	

APPLICANT(S), PLEASE READ:

ANY PERSON WHO KNOWINGLY OR WILLFULLY PRESENTS A FALSE OR FRAUDULENT CLAIM FOR PAYMENT OF A LOSS OR BENEFIT OR WHO KNOWINGLY OR WILLFULLY PRESENTS FALSE INFORMATION IN AN APPLICATION FOR INSURANCE IS GUILTY OF A CRIME AND MAY BE SUBJECT TO FINES AND CONFINEMENT IN PRISON.

PLEASE EXPLAIN TO SUBSCRIBER (APPLICANT): BY ACCEPTANCE OF THIS POLICY, THE SUBSCRIBER AGREES TO HAVE THE AMOUNT OF INSURANCE ADJUSTED FOR BUILDINGS AND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A NATIONALLY RECOGNIZED BUILDING INDEX.

Business Name:	Agent: AB8280 DENG'S INSURANCE SERVICES
Applicant Name: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Inc	Policy Number: Q971659988

I certify that I have:

- read to the Applicant all of the questions as they are printed on the application and any attached supplemental application;
- included all answers as given by the Applicant; and
- given a copy of this completed application and any attachment to the Applicant.

Do you consider this an acceptable risk? _____ Agent's Signature _____

한미노회협의회결의안

[헌의안4] 한미노회협의회의 자매결안 헌의안을 받다.

[CCKAP 헌의안] - 종전의 한미노회 조정위원회는 그 명칭을 미국장로교회 한미노회 협의회로 개칭하고 3개노회 연합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여 실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인해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와 자매 결연의 건
2. 각 한미노회가 상회비를 30불로 인상하여 동일한 적용을 하는 것에 관한 건
3. 각 한미노회가 목사전입 및 후보생에 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ERIE INSURANCE GROUP

ERIE INSURANCE
BUSINESS CATASTROPHE LIABILITY
ULTRAPACK PLUS
IL 09 85C (Ed. 1/15) UF-B475

DISCLOSURE NOTICE PURSUANT TO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SCHEDULE

Terrorism Premium (Certified Acts) \$ 2

This premium is the total Certified Acts premium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Coverage Part(s), Coverage Forms(s) and/or Policy(s):

Business Catastrophe Liability
Ultrapack Plus

Additional Information, if any, concerning the terrorism premium:

Information required to complete this Schedule, if not shown above, will be shown in the Declarations.

A. Disclosure of Premium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we are required to provide you with a notice disclosing the portion of your premium, if any, attributable to coverage for terrorist acts certified under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he portion of your premium attributable to such coverage is shown in the Schedule above.

B. Disclosure of Federal Participation In Payment Of Terrorism Loss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Treasury, will pay a share of terrorism losses insured under the federal program. The federal share equals 85% of that portion of the amount of such insured losses that exceeds the applicable insurer retention. However, if aggregate insured losses attributable to terrorist acts certified under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exceed \$100 billion in a Program Year

(January 1 through December 31), the Treasury shall not make any payment for any portion of the amount of such losses that exceeds \$100 billion.

C. Cap On Insurer Participation In Payment Of Terrorism Losses

If aggregate insured losses attributable to terrorist acts certified under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exceed \$100 billion in a Program Year (January 1 through December 31) and we have met our insurer deductible under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we shall not be liable for the payment of any portion of the amount of such losses that exceeds \$100 billion, and in such case insured losses up to that amount are subject to pro rata allocation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Copyright, ISO Properties, Inc.,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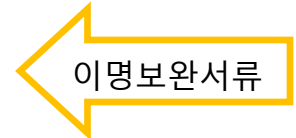
[현의안4] 민족장로교회의 전입건은 서류가 보완 되었으므로 전입허락을 하기로 하다.



민족장로교회

Glen Burni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Third Avenue, S.W., Glen Burnie, Maryland 21061
Tel: (401) 760-0956 (C) 768-3798 (H) Fax: (410) 766-2431

목사: 정창은
Pastor: Rev. Chang Eun Chung



교회 가입 청원서 양식

민족장로교회(Glen Burni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Third Ave. s.w. Glen Burnie, Md 21061
410)760-0956(c)
Pin No

수신: 대서양 한미 노회 장
참조: 서기. 사무총장
첨부: 당회록 사본 1부

3.15.2017

본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귀 노회에 가입하기를 청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 귀 노회의 지교회로 미국장로교회의 헌법과 예배모범 및 신앙고백을 준수하며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임시 당회 장 정창은 목사

당회 서기 최용석장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Mailing Address: P.O. Box 593, Glen Burnie, MD 21060-0593 목사관: 206 A Street, S.W., Glen Burnie, MD 21061

Minutes of Commission to Install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The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Atlantic Korean-American Presbytery to install **Rev. Ung Be Kim** as Pastor of the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met at the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in 2629 Centreville Rd, Herndon, VA 20171 on the 3rd day of the month of September in the Year 2017 at 10:30 O'clock.

The following Commission Members were present:

Ruling Elders:

Jong Wook Ma

Sun Ja Lee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Jung Sook Kim

Kwan Joon Park

Myung Chul Cho

In the AKAP General Council meeting, Rev. Jung Sook Kim was elected as Moderator.

A quorum of the Commission was present.

The Commission Moderator stated the proceedings of the Presbytery in preparation to installation.

Rev. Nam Hong Cho, EP/SC of AKAP, asked on behalf of the moderator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andidate.

Ruling Elder Chang Kyu Choi asked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to the congregation.

These being answered in the affirmative, the candidate stood and with prayer led by Rev. Jung Sook Kim, moderator, the Commission installed him as Pastor of Eden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the Presbytery, and Congregation came forward to offer the newly ins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 cordial reception and affectionate regard.

Rev. Myung Chul Cho delivered the Charge to the Pastor and to the Congregation.

The newly ins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made a brief statement.

Thre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presented three gifts to their newly installed Pastor.

At the conclusion of the service, Rev. Kwan Joon Park pronounced the benediction.

After taking a group picture with the newly install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other participants, the Commission was adjourned.

Submitted by

Jung Sook Kim, Moderator of this Commission



미국 장로교 대서양 한미노회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USA)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301)864-9255, (240) 447-1664 akap1997@hotmail.com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질의서

수신자: 안현준 목사(메릴랜드 장로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안현준 목사)

친애하는 안현준 목사님과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서양한미노회에서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절차에 따라(D-2.0102) 피고소인(안현준 목사)을 조사함에 있어 1차적으로 56차 노회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오니 오는 11/7(화)까지, 서신 또는 이메일로 아래 질의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57차 정기노회시 보고와 향후 상임사법위원회 회부전 대안제시에 중요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회신: 서신(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akap1997@hotmail.com)

-----아 래-----

1. 55-1차 노회가 불법이었음을 고소한 일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56차 노회가 결의한 행정위원회 집행정지 신청 중, 2017년 10월 메릴랜드 장로교회에 출석중인 분들이 목회위원회에 접수한 '활동교인 인정 청원서'와 귀 교회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회위 출석과 증거자료를 당회장으로서 따르지 않고, 목회위의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와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사법위원회에 제소하지 않고 대회사법위에 제소하는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이 대서양한미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수차례 고소하는 일로 노회가 재판을 위해 희생하는 목회적, 행정적, 물적 피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대책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55차 노회에서 자신의 자숙과 재발방지 약속 후 계속하여 대회에 노회를 고소하는 이유와 향후 다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 병 호 목사
 위원 조 은 상 목사
 위원 최 동 구 장로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보고서 D-9.010b

일시: 2017년 11월 13일

수신자: 안현준 목사(매릴랜드장로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안현준 목사)

대회에 대서양한미노회를 수차례 고발하고 음해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아래 대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위원회에 고발하지 않는다. 아래 합의서에 싸인해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조사위원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답변/입장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답변을 거부했기에 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조사위원회의 결론

조사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대안에 싸인을 하고 동의할 경우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3. 합의를 위한 대안

1) 노회의 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대회에 노회를 수차례 고발하고 음해한 것을 노회 앞에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도록 한다.

2) 앞으로 노회의 모든 위원회에 5년간 참여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대안에 대한 합의

고소인(대서양한미노회 서기 조남홍): _____

피고소인(매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_____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병호 목사 _____



조사위원 조은상 목사 _____



조사위원 최동구 장로 _____

회신주소: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 주소: akap1997@hotmail.com or choi1459@gmail.com

양식 No.25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회 보고서 D-9.010b

일시: 2017년 11월 13일

수신자: 김범수 목사(워싱턴동산교회)

발신자: 최병호 목사(조사위원회 위원장)

참고: 고소인(노회), 피고소인(김범수 목사)

대회에 대서양한미노회를 수차례 거짓 고발하고 음해한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78차 운영위원회가 결의하여 56차 노회에서 인준된 본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아래 대안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법위원회에 고발하지 않는다. 아래 합의서에 싸인해서 2017년 11월 30일까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조사위원회의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조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답변/입장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답변을 거부했기에 조사위원회의 계속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조사위원회의 결론

조사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대안에 싸인을 하고 동의할 경우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3. ~~합의~~ 대안

- 1)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2)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4. 대안에 대한 합의

고소인(대서양한미노회 서기 조남홍): _____



피고소인(위싱턴동산교회 김범수): _____

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대서양 한미노회 조사위원장 최병호 목사 _____

조사위원 조은상 목사 _____

조사위원 최동구 장로 _____

회신주소: 2629 Centreville Road, Herndon, VA, 20171

이메일 주소: akap1997@hotmail.com or choi1459@gmail.com

[조사위원회 보고] 조사위원회 보고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보고만을 받았으며 해당
안건은 미결로 남다.

남부지역보고

대서양 한미노회 남부지역 안건 및 보고(연합)

일시: 2016년 12월 12일 장소: 월밍톤장로교회엿

참석자: 결석자: 안건:

1. 내규수정위원회: 남부지역의 자치권을 위해 내규수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규를 넣으시길 동의합니다. (동의안)

"노회안에 지역적인 이유로 남부 지역 교회들을 위해 노회안에 남부지역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직원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재산과 법적인 문제는 공동관리하며 중앙위원회, 이사회, 사법위원회, 기타 노회 공동의 사역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함께 한다."

2. 임낙길 목사님을 발도스타장로교회에 2년간 지정목사로 임명한다.

3. 2017년도 남부지역 노회 각위원회 공천 명단:

- 1) 부노회장: 남윤상
- 2) 부서기: 최병호
- 3) 회계: 김대왕
- 4) 운영위원회: 남윤상/김대왕, 김세준, 권성관
- 5) 목사후보생위원회: 김선재/허성영, 김남준, 임기윤
- 6) 대표위원회: 김세준/조진영, 임낙길, 김창환, 최병기, 김분화
- 7) 목회위원회(운영, 교육, 개척): 이내용목사/조진영, 김세준
- 8) 목사후보생위원회: 허성영목사/김범수, 김선재, 임기윤
- 9) 재정위원회(공천, 대표): 김대왕목사/신동욱, 임낙길
- 10) 이사회(연합): 이원걸
- 11) 연합사법위원회(연합): 남윤상
- 12) 총무청빙위원회(연합): 최병호, 남윤상, 조진영
- 13) 내규수정위원회(연합): 남윤상, 김세준, 최병호
- 14) 감사: 박종식

4. 제 5 회 가족수양회 재정보고(2017 년)

일시: 2017년 7월 20일(월) - 21일(목) 3박 4일간

장소: Sand Dunes Resort

주소: 201 74th Ave. N., Myrtle Beach, SC 29572 한어강사:

장학일목사(예수마을교회 담임)

영어강사: Luke Choi (Associate Stated Clerk of PCUSA)

참가자수: 283명

수입총액: \$61,729

지출총액: \$59,444.20

총잔액: \$2,284.80

5. 남부노회 재정보고 (별첨참고바람)
6. 대서양한미노회(남부) 2017년 서기록(1월-12월)
 - 1월 15일: 신동욱목사 열린장로교회 사임(버밍햄 장로교회 청빙받음)
 - 1월 16일(월)-20일(금): 1001 NWC Conference, St. Pete, FL
 - 1월 23일(월): 남부지회 신년하례회,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목사) * 신동욱목사를 버밍햄 노회로 이명하다.
 - 2월 13일(월)-17일(금): 집필자모임 참석, 클리브랜드중앙장로교회(담임 김성택목사)
 - 2월 19일(주일): 박종식목사님을 하인스빌 열린장로교회 지정목사로 파송하다.
 - 2월 20일(월): 대서양한미노회, 주 예수교회 (담임 배현찬목사)
 - 2월 20일(월)-22(수): 목사계속교육, 유니온신학교
 - 2월 20일(월)-23(목): 학원목회컨퍼런스, 콜롬비아장로교회(담임 김동영목사)
 - 2월 26일(주일): 개척교회 선교주일, 개척교회 선교후원금 모금
 - 3월 13일(월)-15일(수): 지역선교세미나,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목사)
 - 4월 3일(월)-5일(수): 남부지회 목회자수양회, 재깰아일랜드
 - 4월 24일(월)-28일(금): NCKPC 총회참석, 서울 엠배새더호텔
 - 5월 15일(월)-18일(목): 영어컨퍼런스, 씨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목사)
 - 6월 4일(주일): 박종식목사님을 열린장로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다.
 - 6월 6일(화)-13일(화): 혼두라스단기선교, 권영갑선교사
 - 6월 24일(토): 입양아초청잔치, 베다니장로교회
 - 6월 23일(금)-25일(주일): 2세교육세미나, 베다니장로교회
 - 7월 2일(주일): 김범수부목사(Chris)가 베다니장로교회를 사임하고 공군 채플린으로 떠남
 - 7월 8일(토): 한국목회자들 미국교회 순방팀 방문, 베다니장로교회
 - 7월 17일(월)-20일(목): 제5회 가족수양회(강사: 장학일목사/예수마을교회, Sands Resorts)
 - 7월 18일(화): 대서양한미노회
 - 7월 24일(월): 총회부서기 초청 헌법특강 (강사: 최정석목사)
 - 8월 6일(주일): 조지아장로교회 조진영목사 안식년(8월 6일-2018년 6월 30일. 사례: \$30,000)
 - 8월 6일-20일: 조지아장로교회 주일 설교목사로 김범수목사(Chris Kim)를 파송하다.
 - 8월 7일-11일: 개척교회코치 컨퍼런스참석(샌피, 플로리다)
 - 8월 20일(주일): 베다니장로교회 교육관 입당식, 남부지회모임(최병기, 김남준목사를 회원으로 받음)
 - 8월 27일(주일): 최병기 목사님을 조지아장로교회 주일설교목사로 파송하다.
 - 8월 29일: 라그랜지장로교회 이내용목사 노회와 교단 탈퇴함
 - 9월 3일(주일): 신학교주일, 콜롬비아신학교 장학금 전달 9월 10일-24일: 허리케인 구호헌금 캠페인
 - 9월 25일-28일: 3040목회세미나, 찬양교회(담임 허봉기목사)
 - 9월 27일-29일: CCKAP 연합노회, 총회본부
 - 9월 28일-29일: 평신도비전컨퍼런스, 총회본부

9월 21일-10월 19일: 권영갑선교사 선교보고, 회원교회 방문
 10월 8일(주일): 매릴랜드제일장로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11월 5일(주일): 남부지회(베다니장로교회, 아틀란타)
 11월 13일(월): 사무총장(총무) 청빙위원회 모임(최종후보자 선출)
 11월 16일(목): 운영위원회(사무총장 최종 후보자 보고)
 11월 22일-24일: 장로교대학생 수련회(일리노이주 수양관)
 11월 26일(주일): 임낙길 목사 은퇴예배, 발도스타장로교회
 12월 3일(주일): 조진영목사를 발도스타장로교회 임시목사로 파송하다. 창립32주년기념주일.
 12월 4일-5일: 연합대서양한미노회, 웨잇빌장로교회(담임 이정남목사)

7. 남부지회 내규: 남부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11월 5일)

[내규헌의안] 다음과 같은 헌의안은 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여 허락하다.

대서양한미노회 남부지회 내규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South) Bylaw

제1장 명칭과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서양한미노회(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AKAP) 산하 남부지회(가칭 AKAP(South))라 칭한다. 본회는 대서양한미노회 안에서 남부지회 회원교회를 위해 자치적으로 대서양한미노회의 일을 대행한다. 본회는 2012년 6월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에서 열린 미국 장로교 220차 총회에서 승인함에 따라서 2012년 2월 7일 대서양한미노회 대표자들과 협약함에 따라 남부지회를 구성한다.

제2조 지역 본 남부지회 산하 모든 지교회들은 인근 동남부 지역과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다. 그 외 지역은 필요에 따라 회원교회로 가입을 허락한다.

제3조 치리

3.1 본회는 우선적으로 미국장로교 헌법(제1부 신앙고백서, 제2부 규례서)에 의하여 치리되며, 이차적으로 본 규칙에 의거한다.

3.2 본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지만 남부지회가 교단의 정식노회로 분리 될 때까지 대서양한미노회의 안에서 남부지회로 한다.

제4조 책임과 권한

4.1 본회는 규례서에 명시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4.2 임무와 책임: 노회는 총무와 서기의 권한, 책임, 위임된 임무들이 상세히 기록된 직책설명서를 승인해야 한다. 서기는 규례서가 지시하는 모든 책임들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일반원칙

1.1 노회원: 노회원은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들과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들로 구성한다.

1.2 목사회원: 본 노회관할 구역 내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들로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1.3 장로회원: 장로회원은 노회 관할 구역 내 지교회 당회로부터 노회 총대로 파송받은 장로이다. 노회 총대 장로는 청지기로서 본 회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1.4 기타회원: 본 회의 필요에 따라 목사 또는 장로 회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목사와 장로 총대들의 형평성

목사와 장로의 수는 가능한 동일해야 한다. 각 교회는 노회가 요청한 숫자의 장로를 파송해야 한다. 100명 이하 1명, 200명 이하 2명, 300명 이하 3명, 400명 이하 4명, 500명 이하 5명, 500명 이상 6명.

제3조 회원의 의무

회원 교회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회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노회에서의 발언권, 투표권의 제한을 받는다.

제4조 발언권

타 공의회외의 정회원이 본 노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노회의 결정에 따라 발언권을 허락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조 정기노회

1.1 회의일정: 정기노회는 2회(1월, 11월) 회집하며, 사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날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 필요시 임시 노회를 가질 수 있다.

1.2 예배의 헌금: 예배시 드린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본 회의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 목사안수 예배시 헌금은 목사 후보생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제2조 임시노회

2.1 소집: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각기 다른 교회의 3인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3인의 총대 장로가 합의하여 요청할 때 임시노회를 소집한다. 만약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노회 서기 또는 부서기가 회의 소집을 해야 한다.

2.2 통보: 임시노회 소집 통보는 늦어도 소집일 10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2.3 장소와 비용: 임시노회 일시와 장소는 소집자가 소집 요청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회의 교통비는 노회가 지불하고, 숙박비는 소집하는 교회가 지불한다(개스비는 1시간 이내 50불, 1시간 이상 100불). 특별한 경우 노회 또는 교회가 모두 지불할 수도 있다.

제3조 회의록

3.1 정기/임시 노회록은 정기/임시 노회 후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하고 다음 노회에서 채택한다. 노회록은 가능한 한글과 영어 이중언어로 기록되고 분배되어야 한다.

3.2 회의록 검토: 서기 또는 부서기는 각 교회의 당회록과 노회의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4조 정족수

본 회의의 정족수는 각기 다른 교회 3명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장로 총대 3명으로 한다. 단 목사는 지교회 시무 목사이어야 한다. 지교회 장로 결원이나 노회 총대 장로 파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노회에서 지교회에 장로를 대신 파송하여 당회와 노회 총대 일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 회의진행

5.1 회의진행법: 찬반의 경우 동등한 발언수와 시간(3분)이 주어져야 한다. 토의시간이 지연될 경우 토론종결을 통해 회의 지연을 방지한다. 회의를 방해할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모든

회의는 본 교단의 헌법이나 본 규칙이 다른 방법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가장 최신 개정만국통상 회의법(Robert's Rules of Order)에 의거한다.

5.2 안건과 유인물:

5.2.a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유인물만 정기/임시노회에서 다룰 수 있다. 단,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는 제외된다.

5.2.b 본 회에서 다루어질 모든 보고서들과 유인물들은 정기노회 21일 전에 본 회 서기 또는 부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하며, 서기 또는 부서기는 정기노회 개회 14일 전에 운영위원회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5.2.c 본 회의 유인물은 서기 또는 부서기가 목사나 장로 총대들에게 적어도 정기노회 7일 전에 서면, 인터넷웹,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야 한다.

5.3 신안건 상정:

5.3.a 신안건은 정기노회 전에 서기 또는 부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회순 통과시 출석 회원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다

5.3.b 신안건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은 안건을 말한다.

5.4 정회: 정회는 반드시 속회 일시를 지정해야 한다. 만약 속회 일시를 지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을 때는 그 회의는 폐회로 인정한다.

5.5 전자회의: 카톡과 컨퍼런스 콜(tele-conference call)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회의로 인정하나, 이메일은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5.6 회원 출석: 회원인 목사나 총대장로는 유고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노회에 참석해야 한다. 특히 목사는 노회로 정한 날에 당회나 그 밖의 다른 회의를 계획해서는 안되며, 목사나 총대 장로가 노회를 참석하지 못할 다른 집회들은 피해야 한다.

5.7 회칙수정은 투표자 3/4의 찬성을 얻어 즉시 발효된다.

제4장 임원과 직원

제1조 임원

본 노회의 임원들은 필요에 따라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서기를 둘 수 있다.

제2조 임기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 선거

3.1 선출과 취임: 총무(사무총장), 부총무, 서기, 부서기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은 연말 정기노회에서 선출과 동시에 취임하되 임기는 새해 1월 1일 부터 시작된다.

제4조 중립성

4.1 임무의 중립: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와 서기는 공정한 노회 운영을 위해 제반 사항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4.2 발언의 중립: 노회장, 부노회장, 총무와 서기는 노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 이외의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다. 단, 노회원의 허락을 받고 발언할 수 있다.

4.3 임무의 제한: 총무(사무총장)와 서기는 지교회의 무질서 해결을 위한 행정 특별 위원회, 징계 사건의 조사위원회, 교정사건의 변호인단, 특별소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그러나 Ex-Officio 로 참석할 수 있다.

제5조 노회장/부노회장

5.1 사회: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정기/임시노회의 사회를 맡는다

5.2 권한:

5.2.a 노회장 또는 부노회장은 임원회를 주관하고, 총무 또는 서기와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는다.

5.2.b 노회장은 임원들의 협력을 받아, 징계 사건 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권한과 노회를 상대로 한 교정고소 사건에 노회를 대표하여 담당할 변호인단을 지명 할 권한을 가진다.

6.3.1. 부노회장 협력과 대행: 부노회장은 노회장이 위임한 기능과 의무들을 이행하며, 노회장 유고시 노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가 해당 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 5.1 운영위원회: 노회 운영과 공천의 일을 담당한다.
- 5.2 목회위원회: 목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5.3 목사후보생위원회: 목사후보생 업무를 담당한다.
- 5.4 사법위원회: 노회의 사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5.5 이사회: 노회와 지교회의 재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5.6 전권위원회: 노회의 인준을 받아 전권을 담당한다.
- 5.7 조사위원회: 노회가 요청한 조사 임무를 담당한다.
- 5.8 재정위원회: 노회의 예산, 지출, 및 모든 재정을 담당한다.
- 5.9 선교위원회: 교회개척과 선교의 사역을 담당한다

제6장 부칙

본회와 회원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성경과 신앙양심에 따라 동성애자들의 결혼, 안수, 건물사용, 회원가입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수정일: 2017년 11월 5일 (예정)

발효일: 2012년 10월 22일

220차 총회결정: 2012년 6월

대서양한미노회 대표와 남부지역 대표자 계약:

2012년 2월 7일

별첨: 대서양한미노회 대표자

동남부지역 한미노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

- 1. 일시: 2012년 2월 7일 오후6시
- 2. 장소: 메타나장교회
4644 Sandy Plains Rd., Marietta, GA 30066
- 3. 참석: 이영호목사, 김규형목사, 김법수목사, 추삼홍목사, 김삼영목사, 박대웅목사, 김철원목사, 최병호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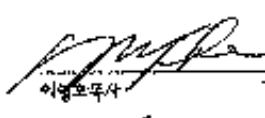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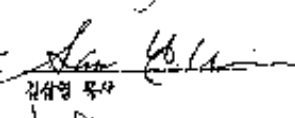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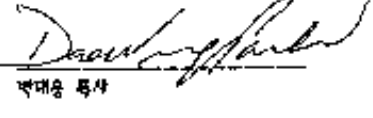
4. 지도: 김규형 목사님

5. 안건:

- 1) 대서양한미노회는 동남부지역 한미노회들을 설립하기 위해 여리와 같이 구성한다.
- 2) 부노회장은 1인으로 한다.
- 3) 부사무총장 1인을 둔다.
- 4) 부서기 1인을 둔다.
- 5) 부회계 1인을 둔다.
- 6) 다음과 같은 각위원회들 둘 수 있다: COM, GPM, NCP-Mission, Education, Nomination, COR, Finance.
- 7) PJC 와 Trustee는 공동으로 운영한다.
- 8) 소명위원회(Comm)를 둔다.
- 9) 운영위원회는 리더십 북사와 상호 동수로 하여 각위원회위원장,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계로 한다.
- 10)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Ex-Officio로 참여한다.
- 11) 중앙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공동으로 운영한다. (노회장, 부노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 12) ✓ 회비는 활동요인 1인당 25달러며 10명은 대서양한미노회로, 15명은 동남부지역 한미노회로 사용하도록 한다.
- 13) 노회는 연2회 여성으로 하여 정비는 주사 책임진다.
- 14) 동남부지역 한미노회는 2012년 총회 후 가을 대서양한미노회 때 결성하도록 한다.



 대서양한미노회 사무총장 대서양한미노회소총장 김법수 목사




 이영호 목사 김삼영 목사 박대웅 목사



 최병호 목사 김철원 목사

8. 대서양 한미노회(남부) 목사후보생 위원회

A. 목사 후보생 현황

1) 조은일:

- 학력: Mdiv(Emory University), Phd 과정(Emory Universit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4년 1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2과목 통과 / 안수시험 3과목, 심리검사 예정

2) 박희준:

- 학력: Mdiv(Azusa Pacific) MA 과정(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5년 7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2과목 통과 / 안수시험 3과목, 심리검사 예정

3) 정관호:

- 학력: Mdiv(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 Church Membership: 조지아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7년 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5과목, 심리검사 예정

4) 최기욱:

- 학력: ~~Mdiv~~ Mdiv(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Thm(Emory University)
- Church Membership: 베다니 장로교회
- Status: Candidate(2017년 11월 승인)
- Exam: 안수시험 4과목, 심리검사 예정

8. 최병기목사 청빙 조건: 파트타임 지정목사/조지아장로교회

Effective salary		Reimbursable expenses (by voucher)	
Cash Salary	\$_18,000__	Automobile expense (___per mile)	\$_1,500_____
Fair rental value of manse	\$_X_____	Business/professional expenses	\$_X_____
Housing Allowance	\$_X_____	SECA Supplement (up to 50%)	\$_X_____
Utilities Allowance	\$_X_____	Continuing Education	\$_Yes_____
Deferred Compensation	\$_X_____	Other allowances	\$_X_____
Other allowances	\$_X_____		
Total	\$_18,000_____	Moving Costs (up to)	\$_X_____

Full medical, pension, disability, and death benefit coverage under the Board of Pensions (X)

Paid Vacation ___X___

Paid Continuing Education ___Yes___

(X mark means not available)

SAMPLE PASTORAL CALL FORM

Pastoral Call
(for Pastor, Co-Pastor, Associate Pastor)

The Korean Presbytery Church of Georgia belonging to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being well satisfied with your qualification for ministry and confident that we have been led to you by the Holy Spirit as one whose service will be profitable to the spiritual interests of our church and fruitful for the Kingdom of our Lord, earnestly and solemnly calls you.

Rzv. Byong Kie Choi
(name)
to undertake the office of
Designated Pastor

of this congregation, beginning November 3, 2017,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allegia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to devote part-time to the ministry of Word and Sacrament among us, we promise and obligate ourselves to pay you in regular monthly payments the following effective salary and following vouchered expenses (fill in those which are agreed to):

Effective salary		Reimbursable expenses (by voucher)	
Cash Salary	\$ <u>18,000</u>	Automobile expense (per mile)	\$ <u>1,500</u>
Fair rental value of home	\$ <u>X</u>	Business/professional expenses	\$ <u>X</u>
Housing Allowance	\$ <u>X</u>	SECA Supplement (up to 50%)	\$ <u>X</u>
Utilities Allowance	\$ <u>X</u>	Continuing Education	\$ <u>X</u>
Deferred Compensation	\$ <u>X</u>	Other allowances	\$ <u>X</u>
Other allowances	\$ <u>X</u>	Moving Costs (up to)	\$ <u>X</u>
Total	\$ <u>18,000</u>		

Full medical, pension, disability, and death benefit coverage under the Board of Pensions
Paid Vacation X
Paid Continuing Education X

We further promise and obligate ourselves to review with you annually the adequacy of this compensation.

In the seventh year of service, the congregation will provide for a three-month Clergy Renewal Leave, continuing the salary and benefits for that period, and providing for pulpit supply in the pastor's absence.

In testimony whereof we have subscribed our names this 5th day of November, 2017

[Handwritten signatures of church representatives]

KPCG Representatives (Church Operation Committee)

9. 김남준 목사 청빙 조건: 파트타임 목사

PASTORAL CALL

Pastoral Call

(The Pastor, Co-Pastor, Associate Pastor)

Th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PCUSA) ... belonging to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being well-satisfied with your qualification for ministry and confident that we have been led to you by the Holy Spirit as one whose service will be profitable to the spiritual interests of our church and fruitful for the Kingdom of our Lord, earnestly and solemnly call you,

Rev. Namjoon Kim
(name)

to undertake the office of

___Pastor for Children Ministry___

of this congregation, beginning ___August 1, 2017___,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allegia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to devote part-time to the ministry of Word and Sacrament among us, we promise and obligate ourselves to pay you in regular monthly payments the following effective salary and following vouchered expenses (fill in those which are agreed to):

Effective salary		Reimbursable expenses (by voucher)	
Cash Salary	\$ 14,000	Automobile expense (per mile)	\$ X
Fair rental value of manse	\$ X	Business/professional expenses	\$ X
Housing Allowance	\$ X	SECA Supplement (up to 50%)	\$ Yes
Utilities Allowance	\$ X	Continuing Education	\$ Yes
Deferred Compensation	\$ X	Other allowances	\$ X
Other allowances	\$ X	Moving Costs (one to)	\$ X
Total	\$ 18,000		

Full medical, pension, disability, and death benefit coverage under the Board of Pensions

Paid Vacation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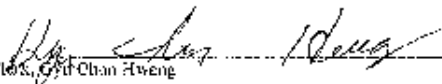
Paid Continuing Education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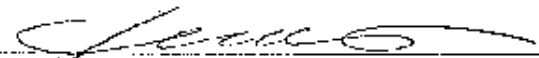
(X mark means not available)

We further promise and obligate ourselves to review with you annually the adequacy of this compensation.

In the seventh year of service, the congregation will provide for a three-month Clergy Renewal Leave, continuing the salary and benefits for that period, and providing for pupils supply in the pastor's absence.

In testimony whereof we have subscribed our names this 1st day of August, 2017.


Session Clerk, Gwi Chan Hwang


Moderator, Byeongho Choi



대서양안미노회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Main: 2629 Centerville Road,
Henderson, VA 20171
301 864-8255(Cell)
akap1997@hotmail.com
Stated Clerk, Rev. Nam Hwang Cho

Branch: 4644 Sandy Plains Rd.
Mareta, GA 30066
878-428-5650(Cell)
choi1458@gmail.com
Associate SC, Rev. Byeongho Cho

November 13, 2017

안건: 사무총장(총무) 청빙전

감기석 목사님께 드립니다.

대서양안미노회 사무총장(총무) 청빙위원회에서 권장일치로 감기석 목사님을 사무총장(총무)으로 선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인터뷰에서 상호간에 동의했던 사항이지만 아래 사무총장 사퇴비 내역을 다시 살펴보고, 청빙 수락서에 확인하셔서 이메일로 청빙위원장인 저에게 오늘저녁(14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빙을 수락하실 경우 15일(목)에 대서양안미노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도록 결정했으나 조운상 노회장님께 연락하셔서 인터뷰 일정에 맞게 속히 비행기표를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와 숙박은 대서양안미노회에서 제공합니다.

1. 2018년 사무총장 사퇴비 내역

- 1) 봉급과 주택비: \$35,000.00
- 2) 교육/회복비: 노회 활동비로 제공함
- 3) 연선(연금): 남부지역에서 제공함
- 4) 메디칼: 노회 재정이 학보당 과 제공함

2. 청빙조건

- 1) 12월 16일 운영위원회 참석하여 인터뷰를 해야 함
- 2) 12월 4일(월)-5일(화) 대서양안미노회에 참석해서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함.
* 장소: 페잇빌 장로교회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잇빌)
- 3) 노회의 위치적 중앙지점인 매릴랜드 또는 북버지니아 지역으로 12월 말까지 이사해야 함
- 4) 총무임기 시작은 2018년 1월 1일이며, 사역은 1월 8일부터 시작함
- 5) 총무임기 규정은 대서양안미노회 내규에 따릅니다.

3. 청빙수락서

나 감기석 목사는 대서양안미노회 사무총장(총무)으로 청빙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위의 모든 청빙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청빙을 수락합니다.

Rev. David K. Kang

Rev. Byeongho Cho
EPNC Moderator of AKAP

Executive Presbyter Call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AKAP)____
belonging to Mid Atlantic Synod, being well satisfied with your qualification for ministry and confident that we have been led to you by the Holy Spirit as one whose service will be profitable to the spiritual interests of our church and fruitful for the Kingdom of our Lord, earnestly and solemnly calls you,

Rev. David K. Kang
(name)

to undertake the office of

Executive Presbyter & Stated Clerk

of this presbytery, beginning January 1, 2018____, promising you in the discharge of your duty all proper support encouragement and allegiance in the Lord.

That you may be free to devote Half-Time to the ministry of Executive Presbyter and Sated Clerk among us, we promise and obligate ourselves to pay you in regular monthly payments the following effective salary and following vouchered expenses (fill in those which are agreed to):

Effective salary		Reimbursable expenses (by voucher)	
Cash Salary	\$ <u>35,000</u> ____	Automobile expense (____per mile)	\$ <u>Included in Salary</u> ____
Fair rental value of manse	\$ <u>X</u> ____	Business/professional expenses	\$ <u>Yes</u> ____
Housing Allowance	\$ <u>X</u> ____	SECA Supplement (up to 50%)	\$ <u>Included in Salary</u> ____
Utilities Allowance	\$ <u>X</u> ____	Continuing Education	\$ <u>Yes</u> ____
Deferred Compensation	\$ <u>X</u> ____	Other allowances	\$ <u>X</u> ____
Other allowances	\$ <u>X</u> ____		
Total	\$ <u>35,000</u> ____	Moving Costs (up to)	\$ <u>X</u> ____

Full medical, pension, disability, and death benefit coverage under the Board of Pensions: pension only____


Paid Vacation Yes____

Paid Continuing Education Yes____

(X mark means not available)

The candidate must move to the centralized location of the AKAP, such as Maryland or northern Virginia area by the end of December, 2017 so that you may start working as the Executive Presbyter and Stated Clerk from January 8, 2018.

In testimony whereof we have subscribed our names this 13th____ day of November____, 2017____.



EPNC Moderator, Byeongho Choi



Rev. David K. Kang

Certification of Call

A. Action by Presbytery of Call

1. The Presbytery of _____ AKAP _____ has reviewed and approved this call.

Date of action _____ (Signed) _____

Stated Clerk or Authorized Signer

B. Action by the Minister's/Candidate's Presbytery

1. The Presbytery of _____ AKAP _____ finds it expedient to release _____ Rev. David K. Kang _____ to accept this call.

Date of action _____ (Signed) _____

Stated Clerk or Authorized Signer

C. Acceptance of the Call

This is to certify that I have received and accepted the call.

Date of action 11/14/17 (Signed) _____

Rev. David K. Kang

*Complete and sign four original copies.
When all parties have signed, an original copy goes to
1) the minister, 2) EPNC, 3) the calling presbytery.*

특별위원회 보고

총무 청빙위원회 보고 : 최병호 위원장의 사무총장 선출 보고가 있었고, 강기석 목사를 최종 추천하다. 노회장 청빙안에 표결을 붙여 강기석 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초빙할 것을 결의하다. 이어서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갖었다.

폐회 ; 노회장 축도로 모든 회무를 마치다. (11시 pm)